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(DB)

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	담당	책임자		

				전 산 (인 자 란						
1. 기업정보								20	년	월	일
기업명				퇴직	연금 계좌	번호					
예약지급일 * 상품 매도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급여 신청 시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예약지급일에 지급합니다.											
2. 이전내용											
이전구분			이전	· 신사유				이전방식			
□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□ 제도전환											
□ 전부이전		□ 계열사이전(과거입사일 인정) □ 합병/영업양수도				현물이전*		미신청	□ 신청		
□ 일부이전 - 가입자 이전		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□ 제도전환 계열사이전(과거입사일 인정) □ 분할/영업양수도									
□ 금액이전		□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				□ 금액지정방식 :원 □ 상품지정방식(뒷장 필수 기재)					
0171111		운용관리기관	X	l 산관리기관	금융기관	·명	상품지정방식은 뒷장 기재			재	
이전받는 금융기관				계좌번호			상품기	지정방식은 5	뒷장 기	재	
				예금주			상품지정방식은 뒷장 기재				
		도로 전부이전하는 경우 이 '일부이전-가입지									
가입자명*	- 1 -	생년월일(주민법		제도전환/전출	들일자		서명 또는 (인)		지급요	청금액	
		서명 또는 (인)									
							서명 또는 (인)				
							서명 또는 (인)				
서명 또는 (인)											
		'일부이전 일괄명부' 파'				나내 동	명이인이 존재하는 경	우 주민번호로	! 작성)		
	(o)	전구분이 일부이전 및		백지정방식인 기재)		# 30 T LU 4		I = 76"	(OL (TI)	
매도순위		상품	ੇ ਰਿ	7		ર્જ	품계좌번호	u _l	l노금액	(원/좌)	

5. 이전 받는 기업 확인(이전사유가 계열사 이전, 합병/양수도인 경우 기재)

※ 이전 받는 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 징구

이전하는 기업명	와	이전받는 기업명	는 본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퇴직	직연금 적립금 이전을 합의합니다.
			이전받는 기업 :	(법인인감)

다음 페이지 계속





^{*} 출력물로 제공하는 '매도순서지정신청서'를 작성하는 경우 생략 가능

6. 현물이전 (현물이전 신청하는 경우 기재)

현물이전 지급 완료 전날의 현물이전 하는 상품의 평가금액으로 이전되며, 이전 후 상품을 해지(급여지급, 계약해지 등)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전 받은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서명 또는 (위	2
	서명 또는 (

7. 상품지정방식 계약이전 세부내용

		상원	풍 명		상품계좌번호	만기일
매도상품						
-11-08						
	입금비율*	* 정수로 기재	* 정수로 기재	* 정수로 기재	* 정수로 기재	* 정수로 기재
이전받는	금융기관명					
금융기관	계좌번호					
	예금주					

^{*} 매도 지정 상품을 모두 팔아 입금비율만큼 이전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.

본 신청서	에 기재된 바와 같	기 퇴직연금 계약	이전을 청구하며	, 이 신	청서 및 구백	서류에	기재된 신청 !	내용은 사실과 디	나름이 없 음을	확인합니다	

[유의사항]

- 1.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급여지급 처리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
 - 1) 은행의 퇴직연금 계약서(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)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금전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 - ▶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: 기업(사용자)
 - 2) 지연보상금은 급여지급 신청일(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)을 포함하여 3영업일*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, 급여지급 신청금액에 대해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**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단,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.
 - *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(단,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5영업일)
 - ** 지연기간이 14일 이내 연 10%, 지연기간이 14일 초과 : 연 20%
- 2. 전부이전인 경우 퇴직연금 계좌가 해지되며,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.
- 3.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전 계약이전 거래시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4. 상품의 매도금액은 신청 금액기준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은 100%, 수익중권 등은 105% 매도하여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. 지급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은행이 정한 매도순서(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 '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')로 상품을 추가 매도하여 지급합니다. 추가 매도에 따라 지급일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, 상품 매도에 따른 지연으로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에 제외됩니다.

[제출서류]

전부이전시	일부이전시	금액이전시
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(변경) 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(당행간 이전시 계좌 있는 경우 제외) 3. 퇴직연금 계약이전 동의서 (당행간 이전시 제외) 4. 이전받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요청공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 5. 법인둥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포함) 또는 포괄양 수도계약서(합병/영업양수도의 경우)	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(변경) 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(당행간 이전시 계좌 있는 경우 제외) 3. 이전받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요청광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 4. 전출입광문(계열사이전인 경우) 5. 법인둥기사항전부중명서(말소포함) 또는 포괄양 수도계약서(분할/영업양수도의 경우)	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(변경) 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(당행간 이전시 계좌 있는 경우 제외) 3. 이전받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요청공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





[※] 인감은 퇴직연금 거래신고 인감 날인, 신탁관리인은 전부이전인 경우에만 작성